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4월 14일 최초 이사회결의의 신주발행에 관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2017년 04월 2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4,500,000주 (증자비율 27.907724%)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4. 신주의 발행가액 : 3,585원(최초 이사회 결의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발행가액과 확정발행가액은 상이할 수 있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한다.
(1) 1차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 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기준주가: $\text{Min}\{(\text{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text{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text{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text{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 2차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기준주가 : $\text{Min}\{(\text{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text{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2, \text{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5.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6.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예정) : 2017년 06월 19일 ~ 2017년 06월 20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 2017년 06월 22일 ~ 2017년 06월 23일 (2일간)
7.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주)
8.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위탁한 증권회사 및 한양증권(주)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양증권(주)의 본·지점
(3) 일반공모청약자 : 한양증권(주)의 본·지점
9.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7년 05월 16일
10.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년 05월 17일 ~ 2017년 05월 23일

11.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790772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의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포함, 이하 분항에서 같다)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한다.)

(3)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에 대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을"이 제3호 나목, 다목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을"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이를 배정한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을"이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해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12. 청약증거금의 대체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13. 납입기일 : 2017년 06월 27일

14. 주금납입처 : 중소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15. 배당 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16. 주권교부 예정일 : 2017년 07월 07일

17. 주권교부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18.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07월 10일

19.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17년 06월 01일 ~ 2017년 06월 08일

(3)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2017년 06월 12일까지로 함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한양증권(주)

20. 기타사항

(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